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73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0.

발 의 자 : 김수민 · 김광수 · 이용주

김종희 · 신용현 · 최경환^국

조배숙 · 박명재 · 김동철

손금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, 기술평가,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,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,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임.

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6조제2항 단서 중 “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,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